

발간등록번호
진흥원-2015-033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안내

2015. 11



(재)한국보육진흥원
Korea Childcare Promotion Institute



목 차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3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4
3.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5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7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9
2. 보육교사 자격기준	14
3. 보육실습 기준	19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23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안내	25
1.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27
2. 단체신청 유의사항	39
질문과 답변	43
부록	49
[부록 1]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공문 예시	51
[부록 2]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공문 예시	52
[부록 3] 보육실습확인서	53
[부록 4]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예시	55
[부록 5]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57



보육교직원 자격제도 개요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배경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도입

2004. 1.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법 부칙(제7153호, 2004. 1. 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에 따라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5. 1. 30. 이후부터 시행됨

●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도입

2005. 12. 29.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 되었으며, 법 부칙(제7785호, 2005. 12. 29.)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제도는 2006. 12. 30. 이후부터 시행됨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 자격확인서 제도 도입 배경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의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2011. 8. 4.), 시행(2012. 8. 5.) 되면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 제정(2012. 8. 3.), 시행(2012. 8. 5.)으로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시되었고,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는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

이에, 2016. 3. 1.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순차적인 배치를 앞두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게 됨

• 배치시기

-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3.1.부터
-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3.1.부터
-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3.1.부터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특수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을 소지한 사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3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1) 자격검정 및 자격증 · 자격확인서 발급기관

- 발급기관 : (재)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재)발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¹⁾에서 수행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법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7.1.)

2) 어린이집 원장 ·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 자격검정 일반원칙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자격검정은 자격 신청 시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별표1])에 따라 검정하는 것이 원칙

☞ 2005. 1. 30. ~ 2014. 2. 28.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는 2014. 2. 28.까지 자격증 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함

1)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http://chrn.childcare.go.kr> ☎ 1661-5666

-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제7153호>에 따라 2005. 1. 29.이전까지의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 자격증 발급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자격증 발급

-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재교부 제한기간 경과 후 자격증을 재발급

3)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 자격검정 일반원칙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자격확인서 발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1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일반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일반기준(300인 이하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 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정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영아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중 12명 이상의 장애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장애아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
 -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 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 어린이집 원장 자격관련 세부 경력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아동간호 업무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이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취득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

- 실시주체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대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2014. 3. 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 기준 시행 이전에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라도 사전직무교육 이수 필요

※ 이미 원장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라도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운데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1회**는 반드시 이수해야 함

※ 40인 미만 자격소지자가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일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보육교사 자격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1])

●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 자격관련 세부 경력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
-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2항제1호 및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이수하여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2.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²⁾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등

● **현행법('14.3.1.~) 시행에 따른 편(재)입학생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2014년 제2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내용 : 2014.1.1. 이전 입학자와 같은 학년으로 편(재)입학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경 전 법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12과목 35학점) 적용

대상자	편(재)입학년도	학번(학년)	교과목 및 학점인정 기준
편(재)입학생	2014년	2012(3학년)	12과목 35학점
	2015년	2013(3학년)	12과목 35학점
	2016년	2014(3학년)	17과목 51학점

- ※ 복수전공부전공(전과)생의 경우 주 전공·전과 이전의 입학년도의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에 따름
-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1호의 2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위를 취득한 시점**으로 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 적용

● **현행법('14.3.1.~) 시행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의 세부 인정기준**
(2013년 제3차, 제4차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 **현행 영유아보육법(2014. 3. 1.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 의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영역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상 교과목명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
보육필수	보육학개론	유아교육(개)론, 영유아보육학
	보육과정	영유아보육과정, 유아교육과정
보육실습	보육실습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 ※ 위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절차 없이 현행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으로 인정, 단,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인정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

㉑ 변경 전(2005. 1. 30. ~ 2014. 2. 28.) 기준에 의한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가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대한 인정 기준

- 대상 : 2014. 1. 1. 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입학한 사람
- 내용 : 변경 전(2005.1.30.~2014.2.28.) 기준에 의한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가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인정

영역별	이수 교과목명(현행법)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변경 전)
보육(3(필수))	유아발달 또는 영아발달	아동발달
영유아교육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수 · 과학지도

- 적용사례 1 : 2013. 3.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현행법에 의한 '영아발달' 을 이수한 경우 종전법에 의한 '아동발달'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사례 2 : 2013. 3.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현행법에 의한 '아동음악' 을 이수한 경우 종전법에 의한 '아동음악과 동작'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사례 3 : 2013. 3.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현행법에 의한 '아동수학지도' 를 이수한 경우 종전법에 의한 '아동수 · 과학지도'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㉒ 현행 영유아보육법(2014. 3. 1.시행)에 의한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가 법 개정으로 분리된 교과목을 변경 전의 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2014. 2. 28.까지 이수한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정 기준

- 대상 : 2014. 3. 1. 이후 학점은행제 등(평생교육법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 내용 : 변경 전 교과목 중 현행법에 따라 분리된 교과목을 별도의 유사교과목 심의 없이 현행법 교과목으로 인정

영역별	이수 교과목명(변경 전)	유사교과목 인정 교과목명(현행법)
보육(3(필수))	아동발달	유아발달 또는 영아발달
영유아교육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음악 또는 아동동작
	아동수 · 과학지도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 적용사례 1 : 2013.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로 2014. 2. 28.이전에 '아동발달' 을 이수한 경우 현행 법에 의한 '영아발달' 또는 '유아발달'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사례 2 : 2013.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로 2014. 2. 28.이전에 '아동음악과 동작' 을 이수한 경우 현행법에 의한 '아동음악' 또는 '아동음악' 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적용사례 3 : 2013. 8월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로 2014. 2. 28.이전에 '아동수학지도' 를 이수한 경우 현행법에 의한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보육실습 기준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

구 분	내 용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의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인정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실습의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 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 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2011.12.8.>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적용 대상자의 경우 보육실습 교과목 2학점으로 이수 가능

●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실습 인정시간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I, II)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예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 I,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 II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주 8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I, II 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I, II 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한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고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하여 어린이집 원장, 양성교육기관의 학과장(교육

원장) 직인을 받아 제출

※ 보육실습확인서 예시 : 부록 3 참고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을 한 경우 등)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보육실습확인서(2013.3.1. 이후 양식) 원본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부록 4 참고)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안내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방법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 부록 5 참고

4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관련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함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²⁾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관련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편입학 시기에 따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기준 적용 방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을 편입하거나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종 학력의 편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적용사례>

- ① '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② '12. 8. 4. 이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시간제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학하여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③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시간제로 나머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16학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법령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당시(20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담당 보육교사는 2016.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각각 법 제22조3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방법 안내**

1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 안내

1) 단체신청 기본 사항

- 단체신청은 5인 이상 가능(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 단체신청은 동일 등급, 동년도 졸업예정(수료)자에 한해 가능
- 인터넷 신청이 원칙
- 단체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 : 2015년 12월 14일 ~ 2016년 1월 30일
- 자격관련 상담 안내
 - (재)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1661-5666
- 개인 등록 사진 파일 형태는 JPG(또는 GIF), 해상도는 200dpi이상
- 제출서류 가운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해당 단체신청 담당자에게 내용을 일괄 통보함. 단체신청 담당자는 추가보완서류를 취합해 제출
- 단체신청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http://chr.childcare.go.kr>)에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 에서 자신의 자격증 신청 진행현황 조회가 가능
- 자격증 배송지와 사진 변경은 마이페이지(나의자격진행현황)에서 “판정완료” 단계까지 가능



2) 국가자격증 인터넷 신청방법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주소

http://chrd.childcare.go.kr

■ 로그인하기

- 이전에 단체신청을 했던 기관의 경우, 종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사용
 - ※ 단체 아이디·비밀번호 분실 시 '(재)한국보육진흥원 상담데스크 1661-5666'로 문의
 - ※ 개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
- 아이디·비밀번호를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등록함(등록 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단체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 후 “단체신청 바로가기” 를 선택하여 단체신청 화면으로 이동
- 단체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 : 2015.12.14(월) ~ 2016.1.30(토)
 - ※ 단체신청 기간 내에 서류 도착 완료 분(2016.1.30. 우편 소인분)까지만 가능
 - ※ 인터넷 신청과 서류 제출 완료 후 자격 검정이 이루어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Certification for childcare teacher


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사업안내 | 자격증종류 및 자격기준 | 자격증신청 | 자료실 | 열린광장





전문성을 갖춘 어린이집원장과 보육교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격기준

 나의 구비서류 안내

 자격증신청 관련서식

 자격증 신청하기
개인 및 단체 자격증 신청 안내

 마이페이지

Member Login

■ **대학교**님
안녕하세요.

로그아웃
마이페이지

단체신청기간 :


▶ **단체신청 바로가기**

정책자료 홍보자료 + MORE

통한 「수수료 현금동봉 금지」 ...	[2010-04-29]
3실습 지도지침 부록	[2010-04-16]
4 양성 보수교육 관련 지침 구입...	[2010-04-01]
	[2010-03-05]
	[2010-03-05]

등기번호 조회

서류의 송달상황을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보육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GO >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 기본정보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기본정보 : 회원가입 시 작성한 정보 확인
 - ② 졸업일자 : 신청단체의 졸업일자 입력
 - ③ 기본정보와 배송지정보가 동일한 경우 체크박스 선택
 - ④ 배송지 정보 : 신청단체의 수령인 란에는 현재 단체 담당자의 이름, 휴대전화, 일반전화, 배송지 상세 주소 입력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자격증 신청 Application

자격증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

- 개인 자격증 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문의전화 1661-5666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2번지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단체 자격증 신청

홈 > 자격증신청 > 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Step 3. 신청자 개별사진등록

Step 4. 수수료결제

Step 5. 결제완료

① 기본정보

수령인 연락처

휴대전화

주소 140-710 서울 용산구 서계동 주연빌딩 5층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대학교 학과 아동복지학부

법인유형 학교 ② 졸업일자

④ 배송지정보 ③ 기본정보와 동일한

수령인


수령인 휴대전화 - - 수령인 일반전화 - -


배송지 주소 우편번호 찾기

다음 >

※ step2 단계부터는 전단계로 이전이 되지 않으며, 입력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므로 주의 요망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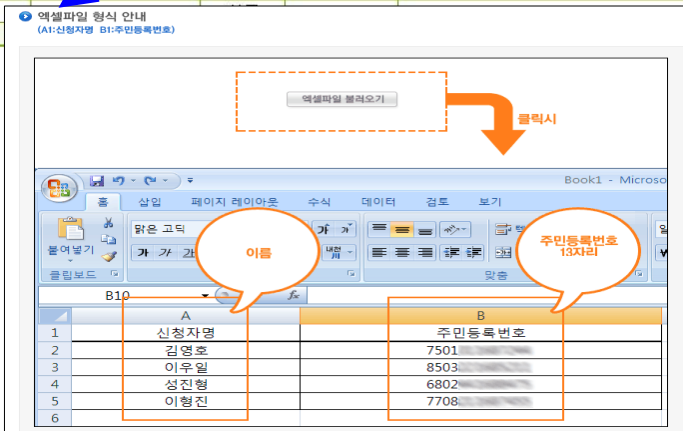
- 신청자 개별정보작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신청자 정보 입력 전 “이용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 ※ 단체신청 인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함
 - ② 엑셀파일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형식으로 저장하여 파일을 불러옴
 - ③ 리스트에 인원을 추가할 경우, 해당 버튼을 이용하여 직접 작성
 - ※ 리스트 입력 시 신청자명, 주민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④ 리스트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정보 검증”을 클릭
 - 클릭 후 신청가능여부와 검증 결과 란의 내용 확인 가능
 - ※ “신청가능여부”에 Y로 표기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N³⁾으로 표기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함
 - ⑤ 입력한 단체 리스트의 “엑셀저장” 가능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신청자 정보 입력 전 이용안내를 반드시 읽어주세요!! 일괄사건 등록은 10명씩 가능합니다!!

① 이용안내 ② 엑셀파일 불러오기 ③ 추가 ④ 신청정보 검증 ⑤ 엑셀저장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신청자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신청가능여부	검증결과
1	<input type="checkbox"/>			신규		
2	<input type="checkbox"/>			신규		
3	<input type="checkbox"/>			신규		
4	<input type="checkbox"/>					
5	<input type="checkbox"/>					

엑셀파일 형식 안내
(A1:신청자명 B1:주민등록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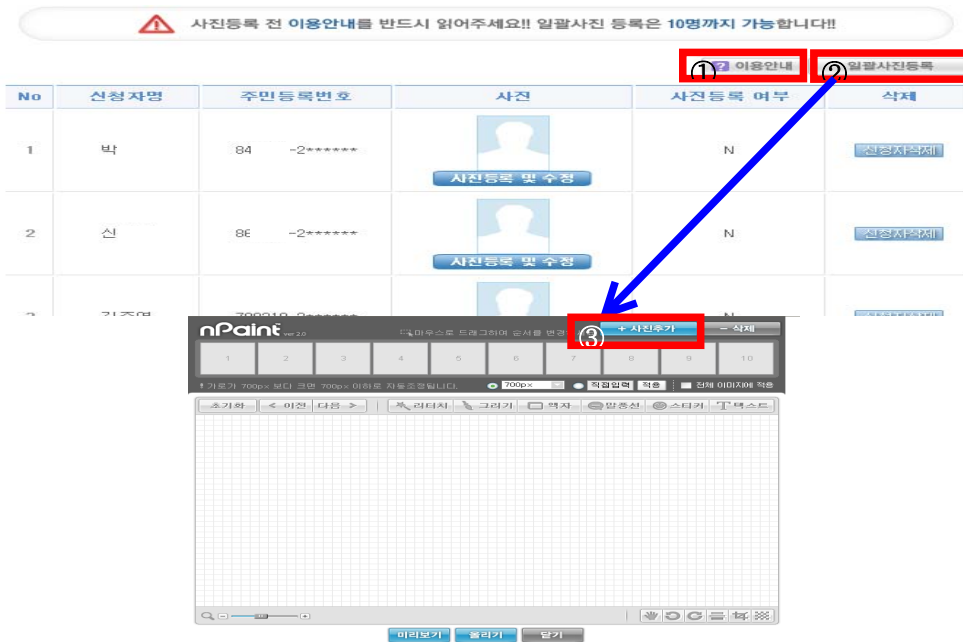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3)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가자격증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 이전 신청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step 3.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

-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신청자 개별 사진 등록 이전 “이용안내”를 통해 세부 내용 확인
 - ② 일괄 사진 등록을 클릭하여 최대 10명까지 등록 가능
 - ③ 사진 올리기 화면에서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10개 이하로 드래그 하여 선택. 선택한 사진은 등록 화면에 미리보기로 확인 가능. 추가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올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 사진 파일 : 파일형식 jpg(또는 gif), 해상도 200dpi이상
 - ※ 일괄 사진 등록 시에는 반드시 파일명을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로 변경해야 함
예시) 홍길동900101, 김자격910101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step 4. 수수료 결제

- 수수료 결제방법선택 :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계좌이체 중에 선택
 - 원하는 방식에 체크한 후 결제하기 버튼 클릭
 - ※ 이외의 방법(무통장입금, 현금 직접 납부) 불가
- 수수료는 1인당 10,000원으로 결제 금액은 총 신청 인원×10,000원
- 결제방법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결제를 위해 추가 프로그램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수수료 입력과 결제 방법 선택 후  버튼을 클릭함
- 입력이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로 이동

▶ 수수료결제

■ 총신청인원	<input type="text"/>	명
■ 결제금액	<input type="text"/>	원 (결제수수료는 1인당 10000 원입니다.)
■ 결제방법선택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실시간 결제처리를 합니다. <input type="radio"/> 가상계좌 :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가상계좌로 입금시 실시간 결제처리가 됩니다. <input type="radio"/> 실시간계좌이체 : 한국보육진흥원계좌로 실시간계좌이체 하는 방식입니다.	

step 5. 결제완료

-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완료 메시지를 확인
 - ※ 가상계좌 결제를 선택한 경우, 아래 화면과 같이 은행명, 계좌번호, 입금기한이 확인됨
가상계좌는 입금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입금기한이 지난 경우 가상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다시 결제 단계를 진행해야 함
- “전달사항 등록” 란을 통해 단체신청 관련 전달 내용을 작성한 후  버튼을 클릭함. 등록이 완료되면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으로 이동
예시) ‘단체 신청자 중 동명이인 있음’, ‘신청자(홍길동) 성명 변경함’ 등
- 전달사항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버튼 중 하나를 선택
 -  : 리스트 출력 화면이 나타나고 출력이 완료되면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으로 이동
 -  : ‘나의 자격증 진행현황’으로 바로 이동

단체 자격증 신청

홈 > 자격증신청 > 신청 > 단체 자격증 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

Step 1. 단체접수 기본정보작성 > Step 2. 신청자 개별정보작성 > Step 3. 신청자 개별사진등록 > Step 4. 수수료결제 > Step 5. 결제완료

지불결과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가상계좌 결제 선택 결과 화면

은행명 : 은행 계좌번호 : 26243528318 입금기한 : 2010


계좌번호를 확인 하시고 입금기한내에 위 은행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사항 등록 (단체신청 진행 과정에서 전달사항이 발생한 경우 메모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리스트로 출력 신청진행현황

step 6. 자격증 신청 서류 제출

•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

- ①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나의 자격증 진행현황)' 에서 아래 화면과 같이 단체번호를 선택하여 상세내역 조회
- ② "개인별 신청내역리스트" 에서 개인에 대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해당자의 상세내역 조회 가능
 - ※ 대학(교) 졸업예정자 국가자격증을 신청한 경우, 자격번호는 졸업일 이후 확인 가능함
- ③ 리스트 출력란의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뜨며,
- ④ "단체신청정보" 조회 가능. 해당 리스트를 출력하여 번호 순서대로 개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함

○ 나의 자격증신청 진행현황(단체)

④ 단체 자격증 신청진행현황

접수번호를 클릭하시면 상세 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단체번호	결제방법	결제여부
	① G101104-00003	가상계좌	미결제 결제방법안내
진행상태	총신청건수	결제접수취소	③ 리스트출력
인터넷신청완료	5	전체취소	출력

④ 개인별 신청내역리스트

단체코드	접수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결제상태	진행상태	사진등록	발급신청서
G101104-00003	T101104-00099	빅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개인 사진 사진등록	발급신청서출력
G101104-00003	② T101104-00100	신		결제	인터넷신청완료	개인 사진 사진등록	발급신청서출력
G101104-00003	T101104-00101	김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개인 사진 사진등록	발급신청서출력
G101104-00003	T101104-00102	손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개인 사진 사진등록	발급신청서출력
G101104-00003	T101104-00103	오		미결제	인터넷신청완료	개인 사진 사진등록	발급신청서출력

④ 단체신청정보

④ 단체신청정보

단체명	대학교	학과명	아동복지학부
단체접수번호 : G101104-00003			
신청인원	5	졸업일자	2010
신청구분	신규	승급	재교부
인원	5	0	0
배송지주소	서울 용산구 서계동 주연빌딩 5층		
담당자			
연락처		휴대전화	
전달사항			

번호	단체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청구분
1	대학교			신규
2	대학교			신규
3	대학교			신규
4	대학교			신규
5	대학교			신규

종료 닫기

3) 단체신청 제출서류

대학(교)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신청 공문(1부) • 자격증 신청자 접수리스트(1부) ※ 공문 양식 : 부록1 참고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개별 제출서류 목록 >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②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2013.3.1 이전 실습이수자</th> <th style="text-align: center;">2013.3.1 이후 실습이수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 하는 유치원에서 실습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⑦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3.1. 이후 실습이수자 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이수자 등)의 경우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 공문 양식 : 부록4 참고 (대학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2013.3.1 이전 실습이수자	2013.3.1 이후 실습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 하는 유치원에서 실습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⑦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2013.3.1 이전 실습이수자	2013.3.1 이후 실습이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 하는 유치원에서 실습 ④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⑤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⑥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⑦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졸업이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공문(1부) • 졸업확정자 명단(1부) ※ 공문 양식 : 부록 2 참고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 개별 제출서류 목록 >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졸업증명서 원본 					

• 단체신청 공문(1부)
 • 자격증 신청자 접수리스트(1부)
 ※ 공문 양식 : 부록1 참고

〈 개별 제출서류 목록 〉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원본 또는 수료증명서 원본
 ③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④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2013.3.1 이전 실습이수자	2013.3.1 이후 실습이수자
①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③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15인 이상 어린이집에서 실습 ①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실습 ①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②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③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④ 실습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 2013.3.1. 이후 실습이수자 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이수자 등)의 경우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 공문 양식 : 부록4 참고 (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 서류 발송주소
 (0430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단체 담당자앞

2 단체신청 유의사항

● 자격증 신청 전 확인사항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는 <http://chrd.childcare.go.kr>입니다.
- 단체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 2016년 1월 30일(2016년 1월 3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홈페이지 로그인 시 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단체 담당자 변경 시 반드시 단체 회원 정보에 대한 인수인계 필요
- 인터넷 신청 중 단체신청 리스트 입력 화면에서 신청검증란에 ‘N’ 4)으로 표기된 경우에 단체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신청은 반드시 공문을 통해 접수합니다. (전자문서 공문 접수 요망)(부록 1 참고)
※ 전자문서 내에서 수신처를 지정하실 때, ‘(재)한국보육진흥원’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발송 시 반드시 공문, 단체리스트, 개별서류(리스트 순서대로) 순으로 취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실습확인서에 학과장(보육교사교육원장) 또는 어린이집 원장 직인이 누락 되었거나, 서류가 컬러복사(스캔문서) 된 경우에는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대학(교) 졸업이후 일주일(7일)이내 졸업확정 공문과 졸업증명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부록 2 참고)

4)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국가자격증을 이미 발급 받은 경우, 이전 신청 내역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자세히 여기서 잠깐! 보육실습확인서 첨부 서류는 이렇게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은 반드시 ‘어린이집 인가증’ 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발급해 준 증서임 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실습당시)위탁계약증서’ 사본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등은 해당 없음
 - 종일제(방과후 과정)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내 시설종류에 ‘종일제(방과후 과정) 유치원’ 으로 기재하며, 교육청장 발행 ‘인가서’ 사본 또는 종일제(방과후 과정) 운영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함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보육실습 당시의 지도교사 자격증(보육교사 1급, 유치원 정교사 1급) 사본을 제출함
 - 지도교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도교사 모두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함
 - 지도교사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사본은 해당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함
 - ※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자격증 교부 지연의 사유가 되므로 자격증 신청이전 반드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방법 안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개정 2012.8.17, 시행 2013.3.1)으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이 강화됨.
 - 2013.3.1 이후부터는 어린이집 원장이 반드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보육실습생을 등록·관리해야 함.
 - ※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보육실습생 등록·관리 방법

- 대상 : 201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한 보육실습생
- 기간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
-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 관리” 에서 등록관리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변경사항

변경 전	현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확인서 -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 관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실습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년도 양식의 보육실습확인서에 수기로 내용 작성 후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준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생 등록 후 출력한 보육실습확인서에 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 날인

- ※ 2013.3.1. 이후 실습이수자 중,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 신청자(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이수자 등)의 경우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 ※ 공문 양식 : 부록 4 참고 (대학 및 교육원에서는 실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을 반드시 첨부하여 공문을 발행해야 함)



질문과 답변

● 어린이집 원장

Q1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1	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을 이수해야 하며, 시·도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각 시·도 및 시·도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Q2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나중에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려면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정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다시 이수하지 않으셔도 되며,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해당하오니 확인 후 자격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Q3	2013년 3월 2일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을 입학하였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학점기준은 무엇인가요?
A3	2013년 3월 2일에 입학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라 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한 사람부터 현행기준(17과목 51학점)이 적용됩니다..
Q4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2013년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2016년 2월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학점기준은 무엇인가요?
A4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되므로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5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2012년도에 입학하여 2016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학점기준은 무엇인가요?
A5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되므로 17과목 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Q6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육교사교육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추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류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6	<p>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외의 추가서류를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① 고등학교 졸업관련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류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관련서류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서류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 제출)</p> <p>② 해당학교의 정식인가여부에 대한 재외공관 확인서류</p> <p>※ 중국학력 소지자 제출서류: 서울공자아카데미를 통한 학력확인서류 ※ 일본학력 소지자 제출서류: 주한일본대사관 발행 인장증명서 및 한글번역본에 대한 공증서류</p>
Q7	당해년도 대학 졸업예정자로 단체 신청을 통해 자격증을 신청하여, 자격증 발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나요?
A7	<p>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하므로 당해년도 졸업예정자로 자격증을 신청하여 졸업여부를 제외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라도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p> <p>졸업확정되어 보육교사 자격번호 부여완료 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p>

● 보육실습 관련

Q1	보육실습기간 총 4주 중에서 1주는 주5회(월요일~금요일) 1일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씩, 2주부터 4주까지는 주3회(월요일~수요일) 1일 12시간씩 실습을 이수하여 총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이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나요?
A1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이 원칙입니다. 실습기간이 4주,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실습 인정시간(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을 준수하지 않았고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실습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보육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보육실습 기간 중에 추석연휴 3일이 있어 보육실습 시간이 4주, 16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보육실습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육실습 기간 중 추석연휴가 있는 경우 연휴 기간만큼 보육실습을 연속으로 이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Q3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습했는데 보육실습으로 인정되나요?
A3	보육실습은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및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이수해야 하므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습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보육실습 이수당시 실습기관의 인가된 보육정원은 14인이었으나, 보육실습 종료 이후에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인정되나요?
A4	보육실습 이수당시 실습기관의 보육정원이 15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습당시 실습기관의 보육정원이 14인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5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인정되나요?
A5	보육실습 지도교사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이어야하므로,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만 취득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6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실습 지도 중간에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인정되나요?
A6	보육실습 지도교사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갖춘 시점이 보육실습 중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습 시작 이전에 지도교사의 자격을 확인하신 후에 보육실습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7	지도교사 1명이 보육실습생을 1년에 3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나요?
A7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교사 1명이 같은 실습기간에 3명 이내로 실습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Q8	성적증명서에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P”로 표기되어 있는데 인정되나요?
A8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이 “P” 인 경우 보육실습 평가점수(80점 이상, B학점 이상)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록

○○○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재)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인력개발국장)

경 유

제 목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

본 ○○대학(교) ○○학과 ○○년도 졸업자(수료자) 총○○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합니다.

졸업일자(수료일자)	신청인원
2016년 ○월 ○일	0명

붙임 1. 단체 신청자 리스트 1부. 끝.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장 직인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협조자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학과(부)장의 직인은 해당 되지 않음

○○○ 대학(교)

수 신 (재)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인력개발국장)
 경 유
 제 목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단체신청자 졸업확정

1. 본 ○○대학(교) ○○학과 ○○년도 단체 신청자 중 총○○명이 최종 졸업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일자	신청인원	졸업자
2016년 ○월 ○일	0명	0명

2. (취소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단체신청인원 중 ○명은 졸업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졸업취소자 성명	졸업취소자 주민등록번호	취소사유
홍길동	-	

- 붙임 1. 졸업확정자 명단 1부
 2. 졸업증명서 00부. 끝.

○○대학(교) 총장 / 대학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문 작성 시 최종 결재는 신청 대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의 직인을 받아야 함. 학과(부)장의 직인은 해당 되지 않음

보 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필수)

이 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명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보육정원	
기관종류		최초인가일	
주소			
연락처			

3. 실습 지도교사

이 름	자격 종류	자격번호

4. 실습 기간

실습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주간)
실습시간	총 시간(매주 요일 ~ 요일까지, 오전 시 ~ 오후 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어린이집의 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부 2.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3.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공문(양성교육기관/실습기관), 단, '13. 3. 1.이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하여 보육실습확인서를 출력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p>보육실습 이수자의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합니다.</p> <p>양성교육기관명에는 재학 중인 대학 또는 교육기관명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p>
실습기관	<p>2013. 3. 1.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단, 2013. 2월 말까지 보육실습 이수자는 실습기관명, 기관종류,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p> <p>가. 실습기관명 : 보육실습을 이수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명을 기재합니다. 나. 실습기관 보육정원 : 실습기관이 인가받은 정원을 기재합니다. 다. 기관종류 :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기재합니다. 라. 최초인가일 : 실습기관의 최초인가일자 를 기재합니다. 마. 주소 : 실습기관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바. 연락처 : 실습기관의 연락처를 기재합니다.</p>
실습 지도교사	<p>2007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부터는 실습 지도교사의 이름, 자격 종류(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중 택1), 자격번호를 기재합니다. (단, 2006년까지 보육실습 이수자는 지도교사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p>
실습 기간	<p>보육실습 이수년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합니다.</p> <p>가. 2007년 이후 보육실습 이수자 :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나. 2006년 보육실습 이수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주간,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다. 2005년까지 보육실습 이수자 : 주간, 총 시간을 기재합니다. ※ 총 시간은 1일 실습 시간에 실습 일수를 곱한 시간을 기재합니다. (예 : 8시간(1일 실습 시간)×20일(실습 일수)=160시간)</p>
직 인	<p>어린이집 원장, 학과장 직인을 모두 동시에 날인해야 합니다.</p> <p>※ 교육기관별(대학, 보육교사교육원, 평생교육원) 학과장 직인 날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의 학과장 직인 날인 • 보육교사교육원 :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날인 •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원장 직인 날인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발행 공문]

○○○ 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수 신 (재)한국보육진흥원장(보육인력개발국장)

경 유

제 목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본 ○○대학(교) ○○학과 졸업자 ○○○는 아래의 보육실습기간 동안 실습 지도교사에게 3명이내의 실습생으로 실습을 지도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2. 실습기관 : ○○○ 어린이집(유치원)
3. 실습생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붙임 1. (실습기관 발행)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류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교) ○○과 학과장 직인
/보육교사교육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붙임1] (실습기관 발행)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류

○○○ 어린이집/유치원

수 신 ○○대학(교) 총장 또는 ○○대학(교) ○○과 학과장
/○○보육교사교육원장

경 유

제 목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서류

본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아래의 보육실습 기간 동안 1인의 실습 지도교사가 3명 이내의 실습생을 지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보육실습 기간 : 0000.00.00 ~ 0000.00.00
2. 실습 지도교사 및 실습생

실습 지도교사	실습생	학교 및 학과
○○○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	○○○대학(교) ○○○학과

붙임 1.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

○○ 어린이집 원장/유치원장 직인

기안자직위 ○○○

검토자직위 ○○○

결재권자직위 ○○○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명-년도별 일련번호 (시행일)

우 도로명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부록5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생 관리 매뉴얼

1. 보육실습생 등록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 및 로그인



② 메뉴보기 > 교육관리 클릭



③ 메뉴보기 > 교육관리 클릭 > 보육실습생 관리 클릭

00머리어미집 [감독장] 로그인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무단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④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언 ★ 사랑나눔 방 ★ 서식공유(법정, 지침) ★ 원격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보육실습생 등록

> 실습기간 ~ 검색
 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등록 수정 삭제 재출 인쇄

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초인기일	기도교사수	실습지도교사이름	자격종류	자격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재출여부

④ 보육실습생 관리 > 등록 클릭

00머리어미집 [감독장] 로그인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무단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④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언 ★ 사랑나눔 방 ★ 서식공유(법정, 지침) ★ 원격지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CHILDCARE SUPPORT MANAGEMENT SYSTEM

보육실습생 등록

> 실습기간 ~ 검색
 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초인기일	기도교사수	실습지도교사이름	자격종류	자격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재출여부

⑤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입력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닫기

② 빈칸 입력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관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 (주)

실습기간	실습시간 * 총 <input type="text"/> 시간 (매주 <input type="text"/> 시간)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input type="radio"/> 어린이집	실습 시설종류 가장	실습 최초	실습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	------------	-------	--------------------	----------------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추가 지양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⑥ 실습기간 체크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닫기

③ 실습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 모양 아이콘을 눌러 입력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 (주)

실습기간	실습시간 * 총 <input type="text"/> 시간 (매주 선택 ~ 매주 선택 ~ 요일까지 1일)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기관	실습기관명 <input type="radio"/> 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정원 19	실습 최초인기일 2006-10-31	실습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	--------------	---------------------	--------------------	----------------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추가 지양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⑦ 시작요일과 종료요일 입력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닫기



Ⅰ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욱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총 [] 시간 < 매주 [] 일 ~ 매주 [] 일 < 요일까지 1일 [] 시간 오전 9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시작요일과
종료요일을 입력

실습기관명	<input type="radio"/> 어린이집	실습기관 부속명	
실습 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Ⅱ 실습지도교사

추가 저장

No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⑧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입력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 닫기



Ⅰ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욱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실습시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총 [] 시간 < 매주 [] 일 ~ 매주 [] 일 < 요일까지 1일 [] 시간 오전 9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입력

실습기관명	<input type="radio"/> 어린이집	실습기관 부속명	19
실습 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간"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군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Ⅱ 실습지도교사

추가 저장

No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	----	----	------	------

⑨ 총 실습시간 자동계산, 입력한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후 저장 클릭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저장 클릭

⑧ 총 시간과 실습주차 자동계산되어 반영

⑧ 등록 확인버튼 클릭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관 등록

실습이수자: 성명(한글) * [000000] - [2*****] 실명확인 외국인
 기본사항: 양성교육기관 * [한양대학교]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100] 시간 <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 근무요일을 선택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
 실습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 []
 연락처: [] 연락처: []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하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구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추가 | 저장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⑩ 실습지도교사 '추가' 클릭

● 보육실습생 등록

※ 보육실습생 등록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은 보육실습 이수확인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보육실습생을 등록하시기 전에 보육실습 기준을 숙지하신 후에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관 등록

실습이수자: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외국인
 기본사항: 양성교육기관 * [한양대학교]

실습기간: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100] 시간 <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 근무요일을 선택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
 실습기관: 시설종류: [가정] 최초인가일: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하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 구 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실습지도교사: 추가 | 저장

⑨ 실습지도교사 추가 클릭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⑪ 재직중인 보육교사 1급 지도교사 선택

지정 참가

▶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부속명	19
	시설종류	가정	최소인가월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정확하지 확인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기관을 선택해 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교사 재직중인 보육교사 1급 지도교사 선택**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1	<input type="checkbox"/>	이한국 박진홍		



⑫ 지도교사 자격번호 입력 후 '저장' 클릭

지정 참가

▶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나보옥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양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시 ~ 오후 6 ~ 시	
기타사항				

× 근무요일을 선택해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어린이집	실습기관 부속명	19
	시설종류	가정	최소인가월	2006-10-31
	연락처	02-000-0000	주소	서울시 △△구 □□동

× "실습기관"의 내용은 어린이집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없으므로,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지도교사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선택해 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교사**

No	<input type="checkbox"/>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1	<input type="checkbox"/>	이한국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 **저장 확인버튼 클릭**

▶ **저장 클릭**

▶ **지도교사 자격번호 입력**



⑬ 완료 '확인' 클릭

▶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 등록**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성명(한글) = 이보욱	주민등록번호 = 000000 - 2*****	실명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영성교육기관 = 한국대학교		

실습기간 =	2013-10-17	~	2013-11-01	(4 주)
실습시간 =	총 180	시간 (매주 월 ~ 요일 ~ 매주 금 ~ 요일까지 1일 9시간) 오전 9 ~ 오후 6 ~ 시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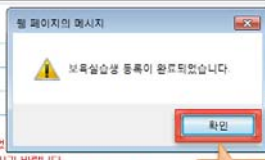
× 근무요일을 선택후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이원아파트
	시설종류 가정
	연락처 02-000-0000

× "실습기관"의 내용은 이원아파트의 정보가 자동연동되어 별도의 입력이 필요한
기관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 구청 업무처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실습이수자 기본사항 및 실습기간을 입력한 후 지정번호를 클릭해야만 실습지도교사 추가가 가능합니다.
× 보육실습생 등록 및 수정은 실습종료일 이후 2개월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 **실습지도교사**

No	☐ 삭제	이름	자격급수	자격번호
1	<input type="checkbox"/>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⑭ 완료 확인버튼 클릭

2. 보육실습생 조회

① 실습기간을 달력 모양 아이콘에서 선택하여 검색

00대관리자 [강원경] | 로그인 |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무단변 함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2항)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차사양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언 | 사랑나눔 방 | 서신공용(발령, 지침) | 원격지원

보육실습생 조회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실습기간 | 검색

※ 이란이집에서 등록된 보육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보육실습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초인기일	지도교사수	실습지도교사이름	자격종류	지역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재출여부
----	----	--------	--------	-------	-------	----------	------	------	------	------	------

② 해당 기간에 입력했던 실습생의 정보 확인가능

00대관리자 [강원경] | 로그인 |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무단변 함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2항)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차사양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언 | 사랑나눔 방 | 서신공용(발령, 지침) | 원격지원

보육실습생 조회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실습기간 | 검색

이름: 나모옥 | 주민등록번호: 000000-2-**** | 양성교육기관: 한국대학교 | 최초인기일: 2006.10.31 | 지도교사수: 1 | 실습지도교사이름: 박진홍 | 자격종류: 보육교사 1급 | 지역번호: 00-0-0000 | 실습기간: 2013-10-07-2013-11-01 | 실습시간: 180 | 재출여부: 미재출

② 해당 기간에 입력했던 실습생 정보 출력

3. 보육실습내용 제출

① 보육실습생관리 조회화면에서 제출 대상자를 선택한 후 '제출' 버튼 클릭

00아이집 [간원장] | 로그인 | huus 한국보육지원정보개발원

무단변경 혐의로 개인정보보호 유증,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 2항)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향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안 | 사랑나눔 방 | 서사공유(법령, 지침) | 원격지원

보육실습내용 제출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입력] | 실습기간 : 2013-10-07 ~ 2013-11-01 | 검색

※ 어린이집에서 등록된 보육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보육실습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이 조회됩니다.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소인기월	지도교사수	실습지도교사이름	지역종류	지역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제출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보록	000000-2-*****	한국대학교	2006.10.31	1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	2013-10-07~2013-11-01	180	미제출

② 제출 클릭

① 제출 대상 클릭

② 보육실습확인서 미리보기 화면에서 입력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후 '제출' 클릭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내용확인)

1. 실습대상자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명
나보록	000000-2-*****	한국대학교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000아이집	실습기관 보육종류	19
기관종류	가정	최소인기월	2006-10-31
주소	연락처		
서울시 △△구 □□동	02-000-0000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지역종류	지역번호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4. 실습기간

실습기간	2013-10-07~2013-11-01 (4주간)
실습시간	총 180 시간 (매주 요일 - 요일 까지, 오전 09시 - 오후 18시)

- 경 고 -
 입력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입력한 정보는 보육실습생이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은 보육실습 종료일 이후 2개월이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 클릭

③ 제출 확인버튼 클릭 시 최종 제출 완료

(실습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제출 처리됨)

보육실습확인서 (제출내용확인)

1. 실습대상자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명
나보국	000000-2-*****	한국대학교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000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장형	19
기관종류	가정	최소인가일	2006-10-31

3. 실습기간

실습기간	2013-10-07~2013-11-01 (4주간)
실습시간	총 180시간 (매주 요일 - 요일 까지, 오전 09시 - 오후 18시)

4. 실습기간

입력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후에는 절대 수정이 되지 않으며 잘못된 정보는 보육실습생이
이후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제출은 보육실습 종료일 이후 2개월이내 자동종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취소

제출시간: 180 | 제출여부: 미제출

4. 보육실습확인서 인쇄

① 보육실습생관리 조회 화면에서 인쇄 대상자를 선택한 후 '인쇄' 클릭

00아이집 [간원장] | 로그인 | 로그인기록 | huu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무단변경 혐의로 개인정보보호 유증, 삭제, 변경하면 관계법령(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2항) 제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 업무연락 | FAQ | 질의 및 제안 | 사랑나눔 방 | 서사공유(법령, 지침) | 원격지원

보육 실습확인서 인쇄

보육실습생관리

이름/주민등록번호 : 이름 : · 실습기간 : 2013-10-07 ~ 2013-11-01 검색

* 00아이집에서 등록된 보육실습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보육실습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실습기간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등록된 보육실습생에 조회됩니다.

선택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	최초인기일	지도교사명	실습지도교사명	자격종류	자격번호	실습기간	실습시간	재출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나보옥	000000-2*****	한국대학교	2006.10.31	1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	2013-10-07~2013-11-01	180	미재출

① 인쇄 대상 클릭 | ② 인쇄 클릭

② 인쇄 미리보기 화면에서 확인 후 출력, 출력 후 어린이집 원장 및 학과장 직인 날인 필수

보육 실 습 확 인 서

1. 실습 이수자 기본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양성교육기관명
나보옥	000000-2*****	한국대학교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00어린이집	실습기관 보육종류	19
기관종류	가정	최초인기일	2006.10.31
주 소	연락처		
서울시 △△구 □□동	02-000-0000		

3. 실습 지도교사

이름	자격종류	자격번호
박진홍	보육교사 1급	00-0-00000

4. 실습기간

실습기간	2013-10-07~2013-11-01 (4주간)
실습시간	총 180시간 (매주 요일 ~ 요일까지, 오전 09시 ~ 오후 18시)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1항에 의한 보육실습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어린이집원장 (서명 또는 인)

학과장 (서명 또는 인)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및 보육교사 자격증 단계신청 방법 안내

2015년 11월 인쇄

2015년 11월 발행

발행인 : 이재인

발행처 : (재)한국보육진흥원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전화 : 02) 6901-0100(대)

홈페이지 : <http://www.kcpi.or.kr>

인쇄처 : 아람에디트(T.02-6925-6942)

* 이 책을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